

2019년도 제1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11.(목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강호갑 위원,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06회)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27건(안건번호 제2019-66304호~67671호)
 - 회의결과 :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경우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계정 418건(안건번호 제2019-4456~4873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368안건은 가결하고, 동일 게시물에 대해 중복으로 청구한 9개 안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2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0개 안건(부결사유 중복 1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0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배타적발행권자가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에 따라 전차 회의록 4쪽에 저작물명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는 의견을 제시함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저작물명은 비실명 처리 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는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저작물명은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66304호~67671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2,027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66304호, 66305호는 네이버 카페 이용자가 메일주소에서 “@” 앞부분의 아이디를 댓글에 기재하면 고전음악 등의 음원파일을 보내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안임
다수의 이용자들이 네이버 아이디를 댓글에 남겨 놓았고, 게시자는 ‘보냈다’ 등의 재댓글을 남김
이메일로 특정 다수인에게 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본 건 게시자와 카페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였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C 위원 : 작성자가 남긴 답글에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남겼으나 실제로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며, 댓글을 남긴 보호원 직원이 음원을 제공받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댓글을 남겼으나 음원은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변함
형사재판에서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심의위원회는 2016년 11월 개최한 전체위원회에서 보호원 직원이 댓글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불법복제물을 받거나,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을 보냈다는 취지의 댓글을 확인함으로써 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음

- A 위원 :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6304~66305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66306호는 권리자가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보호원에 직접 신고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현재 합법시장에서 유료로 구독 가능한 장편소설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B 위원 : 시정을 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6306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2019-66307호는 민원인이 소셜공유 사이트를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게시물 제목이 '○○○ ○○○ 1~20'이며,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링크를 클릭하면 '○○○○○○'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하며,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면 확장자가 gif인 그림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며, 하급심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동의함

- B 위원 :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6307호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66308호는 일본 만화를 디시인사이드 이용자가 ‘☆☆ ☆☆ ☆☆☆ ☆☆☆☆☆☆ ☆☆ ☆☆ ☆☆☆☆’ 제1화를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한 화의 전체분량을 제공하였는데, 만화 중간에 보면 마크가 있고 마크에 ‘●●●●’ 표시와 ‘●●●●●’ 사이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만화는 ‘마루마루’ 사이트에서 복제한 것으로 보임 (합법 사이트의 무료 제공 화면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합법 사이트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만화인 제1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만화 제1화는 현재 합법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부결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나라 마이비누닷컴 사이트 내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며, 이동한 웹 이지에 여러 개의 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 최승수 위원 : '▼▼▼▼▼'에서 프레이밍 링크로 '◆◆◆◆◆'을 보여주고 있음
- C 위원 : 간접방조에 대해 기존 시정권고 사례가 있는지 질의함
- A 위원 : 링크의 링크로 보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링크의 링크이며, 프레이밍 링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한 선례는 없음
본 건이 최초 사례임
- B 위원 : 프레이밍 링크로 설정된 사이트에서 게시물의 상세페이지에 대한 심의를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프레이밍 링크의 메인화면에 대해 국민신문고로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은 해외 사이트이며 민원인은 '▼▼▼▼▼' 사이트에서 해외사이트가 프레임을 통해 보이는 주소를 신고한 것이고, 프레이밍 링크를 통해 보이는 화면의 URL 주소를 신고한 것은 아님
'▼▼▼▼▼' 사이트에서 영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첫 화면이 '◆◆◆◆◆'이며 '◆◆◆◆◆'에 게시된 영화 하나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더라도 URL 주소에는 변동이 없음

- B 위원 : '▼▼▼▼▼'에서 영화보기를 눌렀을 때 확인되는 URL을 신고한 것인데, 프레이밍 링크로 표시되는 '◆◆◆◆◆'의 메인화면이 확인되는 화면만 보면 불법사이트로 링크되는 상세페이지로 이동되는지, 영화에 대한 상세정보로 이동되는지, 네이버 영화 정보로 이동되는지 알 수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보이는 영화 제목을 클릭하여 화면의 변화를 보여주면서)영화 제목을 선택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면 링크를 확인할 수 있음

- B 위원 :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불법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링크정보가 있으므로 방조의 방조 책임을 물어 삭제여부가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됨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서 다뤄야할 내용임

- A 위원 : 어떤 부분에 대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자는 것인지 질의함

- B 위원 : 저작물 상세페이지에 대해 심의하여 가결하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프레이밍 링크를 통해 영화리스트가 보이는 화면을 심의, 의결하여 삭제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타 분과 위원들에게도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체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지만 방조의 방조로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로 넘어가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임
- C 위원 : 게시물에 링크 주소를 기재하여 게시한 것에 대해 방조의 방조로 심의, 의결한 기억이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명확하며 프레임 형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정권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다만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한다면 그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시급하게 처리해야하는 건이 아니라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견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안전번호 제2019-67671호의 경우 '■■■■'는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이며, 앞서 본 사안과 동일한 구조임
 드라마 '수상한 장모 37회 다시보기'를 클릭하면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음
- C 위원 : '■■■■'도 심의 안전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과 '■■■■'을 보여주는 프레임 링크 게시물 2건에 대해 민원인이 신고하였음

- 정현순 전문위원 : 영화와 TV의 프레이밍 링크에서 보이는 화면이 다른 것으로 보임
영화는 개별 영화버튼이 있고 TV는 '■■■■' 초기화면이 확인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영화와 TV 카테고리 모두 동일한 방식이며, '■■■■'도 스크롤을 내려 하단을 보면 방송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저작물명을 선택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되고 링크를 선택하면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는 창이 열림
- C 위원 : TV 드라마도 링크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링크 페이지로 이동한다고 답변함
- 정현순 전문위원 : 하나의 공간을 주고 타 사이트를 보여주는 방식이며, 모든 불법복제물 전송은 해외스트리밍 링크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음
심의위원회에서는 게시물 단위로 심의, 의결하여 시정권고를 하고 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프레이밍으로 사이트를 보여주는 창을 하나의 게시물로 보고 이를 불법복제물등으로 간주하여 시정권고 의결하는 부분이 기존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B 위원 : '▼▼▼▼▼' 사이트 자체가 폐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C 위원 : 전체위원회에서 다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게시물 단위로 시정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안전에 대해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가결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 정현순 전문위원 : 다음 주에 전체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서버는 모두 국내에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만 국내에 서버가 있고, '◆◆◆◆◆◆◆'과 '▣▣▣▣'는 한글로 서비스하는 해외 사이트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7670호~67671호는 프레이밍 링크로 리치사이트를 보여주는 최초 심의 사례로 안전 공유 등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66309호~67699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6309호~67699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67670호, 67671호는 프레이밍 링크에 대한 안전 공유등 논의의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안전번호 제2019-66304호~67699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4456~4873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동일 게시물에 대한 중복 청구 게시물 9개 안전,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

확한 12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0개 안건(부결사유 중복 1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25.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